제1차산업경제위원회 2019.1.18(금)12:00

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문석

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이상식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9년 1월 9일

나. 회부일자 : 2019년 1월 11일

3. 제안 이유

○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3년 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(안 제3조)
- 나.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(안 제4조)
- 다.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업무의 위탁(안 제5조)

5. 검토의견

○ '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'은 서민경제의 안 정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은 적절함.